

교정비용수납업무규정

제정 : 1993. 9. 1
 개정 : 1995. 4. 1
 개정 : 1996. 10. 1
 개정 : 1998. 2. 1
 개정 : 2000. 9. 15
 개정 : 2003. 3. 1
 개정 : 2007. 3. 16
 개정 : 2009. 3. 4
 개정 : 2011. 3. 10
 개정 : 2011. 8. 19
 개정 : 2012. 3. 8
 개정 : 2013. 2. 28
 개정 : 2015. 3. 3
 개정 : 2016. 10. 17
 개정 : 2021. 3. 26
 개정 : 2022. 3. 28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제18조(협회의 사업 등)제2항, KOLAS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제25조 제4항 및 한국계량측정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 정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정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수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교정수수료) 교정수수료라 함은 계량·측정기의 교정에 소요되는 인적, 물적 비용에 대한 대가와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사업의 대가(이하 “표준소급비”라 한다)를 말한다.

제3조(교정수수료의 적용) ① 교정수수료는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으로부터 국가표준을 직접 공급받을 때에 적용하는 “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 교정수수료”와 공인교정기관을 통하여 국가표준을 공급받을 때에 적용하는 “공인교정기관 교정수수료”로 구분한다.

②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에 적용하는 교정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르며 공인교정기관에 적용하는 교정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계량·측정기의 교정비용은 이와 유사한 계량·

측정기의 교정수수료를 적용한다.

④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되지 않는 계량·측정이거나, 최신 측정장비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교정수수료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교정에 소요되는 인건비, 교정설비의 감가상각비, 재료비, 부대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, 표준소급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 실비를 교정수수료로 한다.

⑤ 공인교정기관은 별표 2에서 정한 실비품목의 경우, 해당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한 교정수수료를 협회에 등록할 수 있으며, 등록된 공인교정기관이 요청할 경우 협회는 이를 대외적으로 공시할 수 있다. 또한 등록된 교정수수료에 대하여 등록 공인교정기관이 타당성 검토를 요청할 경우 협회에서는 이를 검토할 수 있다.

제4조(교정 실비의 추가)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 및 공인교정기관이 교정을 위하여 가공, 제작 및 특수 부대시설의 사용 등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정수수료 외에 그 실비를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제5조(결함 있는 계량·측정기의 교정수수료)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 및 공인교정기관의 장이 교정을 실시하였으나, 계량·측정기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교정성적서에 그 교정결과를 기재할 수 없거나 교정하여 사용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 또는 사유를 교정성적서에 기재하고 교정수수료의 100분의 50의 금액 이내로 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표준소급비를 면제한다.

제6조(교정수수료의 할인 등) ① 국가측정대표기관 및 공인교정기관은 교정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회원제 실시 등 효율적인 교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에서 규정한 교정수수료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.

② 교정 신청인이 계량·측정기의 조정 전과 조정 후의 2회 교정을 요구하였을 경우의 교정수수료는 제3조의 교정수수료의 100분의 150금액으로 한다.

제7조(소재장소 교정수수료) ①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 및 공인교정기관은 KOLAS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재장소 교정을 실시할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정수수료의 100분의 120금액으로 한다.

② 제1항의 장비 중 탈·부착, 루프교정 등 부가서비스가 포함되는 경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정수수료의 100분의 180금액으로 한다.

③ 상기 제1항 및 제2항의 교정수수료 이외에 교정에 소요되는 인원의 여비와 장비의 운반비 등을 자체규정에 따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.

제8조(교정성적서의 재발급 비용) 교정성적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건당 5천원을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 및 공인교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 영문으로 발급받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제9조(표준소급비의 기준) ① 표준소급비는 제3조에서 규정한 기본수수료와 추가 수수료로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10의 금액으로 한다.

② 제6조에 따라 할인 등의 경우에는 할인하여 정한 금액의 100분의 10의 금액으로 한다.

제10조(표준소급비의 징수절차)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급비는 협회 정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 및 공인교정기관이 교정 신청인으로부터 징수하여 익월 15일까지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.

제11조(표준소급비의 사용) ① 표준소급비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8조 및 계량에 관한 법률 제65조에서 규정한 정부위탁업무 또는 지정하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에 사용한다.

②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징수되는 표준소급비는 국제표준과의 소급성 유지에 필요한 비용 등에 사용한다.

제12조(징수대장의 비치 및 보존)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 및 공인교정기관은 교정수수료 징수대장(C-200-1) 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3년간 보존한다.

제13조(업무협조) 협회는 교정수수료와 관련된 이의 제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합리적인 조정을 위한 업무 협조와 국가측정표준의 발전에 필요한 통계자료 등을 해당 교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